

문서번호	민원여권과-1957
결재일자	2016.1.27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121호

주무관	민원행정팀장	민원여권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유미옥	김희순	구효일	고재식	김경호	01/27 김기동
협 조	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전산운영팀장 주란				

**원문공개 결재문서 모니터링
결과 분석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**



행 정 관 리 국
(민 원 여 권 과)

원문공개 결재문서 모니터링 결과 분석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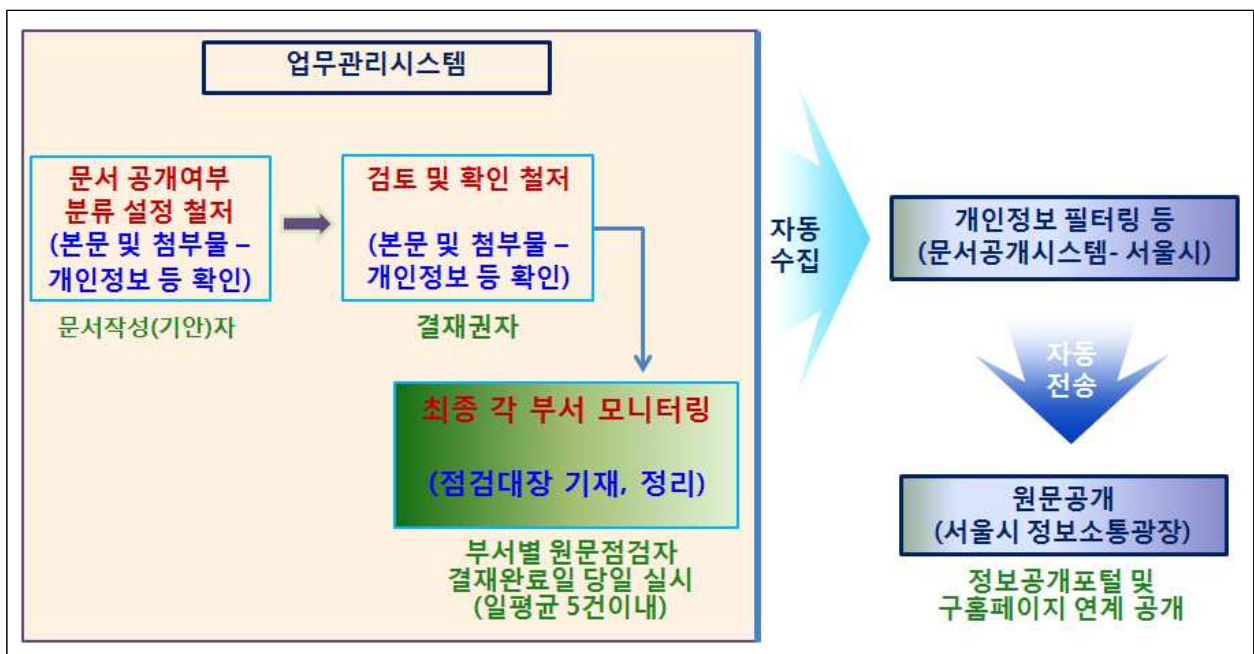
2015.10.1부터 원문공개 확대시행에 따른 3개월간의 국장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문서 공개여부 모니터링을 하여 검출내용을 분석후 향후 원문공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

I 큰 거
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(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)
- 결재시스템 변경에 따른 결재문서 원문공개 확대
 - 구청장방침 제1017호(2015.9.17)호

II 원문공개 개요

- 결재문서 원문공개 흐름도



□ 결재문서 원문 공개형태

공개분류	문서제목	결재문서본문	첨부파일	비고
공개	공개	공개	공개	
부분공개	공개	<u>공개</u>	목록만 공개	
비공개	공개	비공개	비공개	

□ 원문공개방법 및 공개장소

공개시기	공개대상	공 개 일	공개장소 (연계방법)
2015.10.1 ~	국장급 (4급)이상	결재문서 생산일 기준 익일	서울시 정보소통광장

- 서울시 정보소통광장(<http://opengov.seoul.go.kr>)
: 결재문서-결재문서목록-범위선택-세부선택-광진구선택
-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(<https://www.open.go.kr>)
: 원문정보-기관별-기관찾기-검색어입력
- 광진구 홈페이지(<http://www.gwangjin.go.kr/kr>)
: 광진소개-행정정보-결재문서원문공개

Ⅲ 모니터링 분석내용

□ 모니터링개요

- 기 간 : 2015.10.1 ~ 12.31(3개월간)
- 대 상 : 국장이상 결재문서
- 점검내용 : 업무관리시스템상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 문서 여부 확인

□ 결재문서 원문공개 현황[총괄]

○ 결재문서 현황

구 분	총계	구 분			공개율
		공 개	부분공개	비공개	
누계	8,486	5,344	950	2,192	74.2%
2015.10월	2,985	1,894	315	776	74.0%
2015.11월	2,561	1,675	243	643	74.9%
2015.12월	2,940	1,775	392	773	73.7%

- ▶ 2015. 4/4분기 국장이상 결재문서는 총 8,486건임
 - 공개(부분)문서가 6,294건 비공개문서가 2,192건으로 공개율이 74.2%임
 - 3,704건이 출장 및 초과근무 등 문서임

○ 검출현황(1차 민원여권과 모니터링)

구 분	총건수	5호 (의사결정)	6호 (개인정보)	7호 (영업비밀)
검출건수	52	2	41	9
검출비율	100%	3.9%	78.8%	17.3%

- ▶ 원문공개 문서중 비공개대상정보(개인정보 등)가 포함되어 공개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52건이 검출됨
 - 개인정보 포함문서가 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
 - 주민번호, 핸드폰번호, 주소 등이 검출된 사례임
 - 법인등 영업비밀 포함문서는 9건으로
 - 업체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가 검출되었음

- 위원회 의사 결정(의결서내용 및 위원의 서명정보) 포함문서가 2건으로
 - 업체의 평가결과 및 의결서에 위원의 서명 정보가 포함된 문서였음

○ 원문공개 검출현황 문제점

- ▶ 1차 모니터링후 각 부서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
- ▶ 3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동일한 사례(개인정보, 법인 등 영업비밀, 위원회 의결서내용)가 반복 검출되고 있었음
- ▶ 개인정보 공개 방지를 위해 원문에 대해 문서공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필터링을 수행하나
 - 이름, 주소, 핸드폰번호 등 패턴인식이 어려운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엔터 뒷자리 등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난 개인정보는 필터링이 안됨
- ▶ 정보소통광장에서 우리구 검출문서에 대해 원문공개여부를 살펴본바
 - 자치행정과외 4개부서에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7건 발견되었으며
 - 이미지파일의 첨부물 : 서명정보(3건), 주민등록번호(1건), 업체의 자타 비교 견적서(1건)
 - 저소득가정 지원문서에 본문 및 첨부물 : 이름과 보장내용 등 개인에 관한 사항(2건)

- 주요사례

부서명	노출사례
○○○○과	본문에 이름, 보장내용 및 첨부물에 업체 계좌번호
○○○○과	첨부물에 이름, 보장내용, 학교, 평가결과 기재
○○○○과	본문에 이름, 보장내용 및 첨부물에 업체 계좌번호
○ ○ 과	첨부물 심의자료(이미지파일)에 개인서명정보
○○○○과	첨부물(이미지파일) 의결서 및 참석부에 개인서명정보
○○○○과	첨부물 의결서(이미지파일)에 개인서명정보
	첨부물에 업체의 자타견적서(이미지파일)
	첨부물 신청서(이미지파일)에 주민등록번호

- ▶ 매월 검출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나 원문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등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함

IV 대책

○ 전부서(동)별 부서장, 담당자 책임제 강화

- ▶ 결재문서 작성전, 결재시 사전 확인 의무
 - 결재권자 : 결재전 본문 및 첨부물 필히 확인후 결재시행 철저
 - 담당자 : 원문공개형태 숙지로 문서작성시부터 공개분류 철저

○ 전부서(동)별 원문공개 점검 강화

- ▶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 문서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3개월간 민원여권과에서 모니터링 하였음
- ▶ 부서 및 직원들의 인식 및 관심부족으로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어 문서생산부서에서의 점검 및 결과 확인으로 책임감 부여

○ 전자결재시스템 개인정보 확인기능 이중 보강 요청

- ▶ 개인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‘개인정보 필터링 (S/W) 적용 요청 - -- 디지털정보과
- ▶ 공개(부분)문서 결재시, ‘개인정보 확인 알림(팝업창)’ 문구 수정요청 -- 디지털정보과
 - ※ 공개(부분)문서 결재시 검토자·최종결재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안내창 수정

변경전	※ 잠깐!! 원문공개 문서는 바로 국민에게 공개됩니다. 결재 전에 주민번호, 휴대전화번호, 민감정보 등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변경후	※ 잠깐!! 원문공개 문서는 바로 국민에게 공개됩니다. 반드시 결재 전에 본문 및 첨부물에 주민번호, 휴대전화번호, 민감정보 등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요청사항 > - 내용추가 : 반드시, 본문 및 첨부물에

○ 개인정보 노출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

- ▶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: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시
 - 벌칙 :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 - ▶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3]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 5. 비밀엄수의무 위반
 -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람 및 관리소홀 등 : 견책이상
- ※ 업무관리시스템 문서작성시 표출화면

대시민공개 부분공개 비공개
★ 개인정보나 내부 협의(진행)중인 문건이 공개될 경우 관련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공개여부(시민) 공개제한부분 세부기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
 공개제한상세사유
 열람범위(내부) 기관 부서
 열람제한(보안) 설정안함 결재중 제한종료일 영구 엠바고 문서인 경우 제한종료일 지정

V

향후 추진계획

○ 원문공개 점검 및 점검대장 기재·관리 -- 전부서(동)

▶ 원문공개 점검 및 결과 제출

- 점검기간 : 2016.2.1부터 생산되는 문서 ~ 1개월간
- 점검내용 :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 여부 확인
 - 검출문서 공개여부 확인 : 정보소통광장, 구홈페이지 등에서 검출문서의 비공개대상정보 공개여부 결과 확인
(결재문서 완료일 익일 오후부터 확인 가능)
- 점 검 자 : 부서별 원문공개점검단 - 기지정(2명)
- 점 검 일 : 1일 1회(결재문서 완료일)
- 자료제출 : 점검결과와 검출문서의 공개여부 확인
 - 점검결과 : 점검완료후 매일 결과제출(1개월간)

▶ 원문공개 점검대장 기재·관리

결재문서 원문공개 점검대장										
부서명 :				(출장, 초과, 연가 제외)						
연번	결재일자	문서명	문서번호	최종결재권자			점검내용		점검자	
				국장	부구청장	구청장	점검결과	조치	기안자	부서 점검단

○ 월별 원문공개 점검결과 사례 공유 -- 민원여권과

- ▶ 전부서에서 1차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민원여권과에서 2차 재확인후 사례 공유

○ 비공개대상정보포함 문서 계속 검출시

- ▶ 2016.3월부터 검출대상부서 간부회의시 공개 및 처분 조치

VI

행정 사항

○ 결과제출(매일) --- 전부서(동)

- ▶ 원문공개 점검결과 및 검출문서 원문공개 여부 결과 제출

○ 문서작성시 협조사항

- ▶ 개인정보 노출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광진구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조치될 수 있음을 주지

- ▶ 원문공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, 구홈페이지, 정보공개 포털 및 인터넷상 문서명 검색으로도 가능

-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
- 원문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문제 발생시 문서작성자뿐만아니라 기관의 이미지 실추
- 비공개대상정보 포함문서, 특히 개인정보 포함문서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
- 특히 이미지파일의 개인정보는 문서공개시스템에서 필터링이 안되므로 개인정보 등 비공개부분 세밀히 확인

- ▶ 문서 공개분류 및 검토 철저

- 기안자 : 공개분류 철저
- 검토자 및 결재자 :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
- 임의 비공개설정 지양

※ 공개여부 설정

- 본문, 첨부물 모두 공개가능 시 → 공개
- 본문 공개가능, 첨부물 비공개 시 → 부분공개
- 본문, 첨부물 모두 비공개 시 → 비공개
(본문 비공개/첨부 공개일 경우도 비공개)

- 붙임 1. 결재문서 현황 1부
2.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. 끝.